

# 신규 법률 및 중요 세금 정책 업데이트

2020년 12월



# Contents

---

- 1** 결정문 No.128/2020/QH14 : 2021년 국가예산 추정
- 2** 공문 No. 7594 / TCHQ-PC: 관세 행정 위반 제재 규정에 관한 시행령 128 / 2020 / ND-CP
- 3** 공문 No. 5189 / TCT-CS: 조세 관리 시행령 126 / 2020 / ND-CP 주요 요약사항



- 4** 공문 No. 4946/TCT-VP: 분기별 법인세 납부에 대한 정보
- 5** COVID-19 기간 동안 외국인 직원의 검역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처리 지침
- 6** 공문 No. 99066 / CTHN-TTHT :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일

# 1. 결정문 No.128/2020/QH14 : 2021년 국가예산 추정

---

2020년 11월 12일, 국회는 결정문No. 128/2020/QH14를 발행하여, 2021년 국가예산의 추정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정문 128에 따르면, 국회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동의 하였으며, 특히 기준 임금 및 빈곤선을 2020년과 같이 2021년에도 인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국회는 정부에게 기업과 조직들이 COVID-19의 방지와 치료 등의 관련 활동에 대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처리 방안 및 계산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2. 공문 No. 7594 / TCHQ-PC: 관세 행정 위반 제재 규정에 관한 시행령 128 / 2020 / ND-CP



2020년 10월 19일, 정부는 관세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 128/2020/ ND-CP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128에 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과 같은 위반 활동에 대해 다수의 새로운 제재조항을 발효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 된 모조품, 부적절한 국가 주권을 보여주는 이미지 및 콘텐츠 또는 기타 콘텐츠가 베트남의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및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
-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에 따라 세관 당국 또는 기타 관할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되고 불가항력이 극복 된 후 베트남에서 반출 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건 또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베트남으로 다시 반입 된 물품 및 운송 수단의 경우
  - 2014년 관세법 제 29조 4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관세 서류에 보충 신고를 하는 경우
  - 세관 신고자가 납세 의무 결정과 관련된 권한있는 기관의 서면 지침 및 처리 결정을 준수하는 경우

또한, 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 30일 관세청은 시행령 128/2020/ ND-CP에 명시된 새로운 규정을 요약한 공문No. 7594 / TCHQ-PC를 발행했습니다.

### 3. 공문 No. 5189 / TCT-CS: 조세 관리 시행령 126 / 2020 / ND-CP 주요 요약사항

2020년 12월 7일, 국채성은 기업이 새로운 규정의 변경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 행정 규정에 관한 시행령 126 / 2020 / ND-CP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공문 5189 / TCT-CS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 공문 5189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 일시 납세정지 기간 동안의 세무행정 처리 관련
- 국가 예산의 기타 예산 관리
- 납세의무 등록 규정
- 부가세 신고 규정
- 부가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및 천연자원세에 대한 규정
- 배당 소득세 및 이익공유
- 복권, 전기발전, 가스 및 석유,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규정
- 월별, 분기 별, 연간 및 납세 의무 발생 시마다 세금 신고 조건 변경



## 4. 공문 No. 4946/TCT-VP: 분기별 법인세 납부에 대한 정보

2020년 11월 20일, 국세청은 시행령 No. 126 / 2020 / ND-CP에서 법인세의 분기별 납부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더욱 명확히하기 위해 공문 No. 4964 / TCT-VP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분기별 법인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4분기까지 납세를 미루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추정 법인세 지급에 대한 연체이자 산정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3분기 (납세액의 75%) 동안에 추정 법인세 납부액을 미납한 경우, 기업은 3분기 마지막일의 다음날부터 미납된 법인세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상기 규정은 기업이 연간 사업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사업 성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그 상위기관에게 해당 신규 규정이 적용되는 유효 과세시점과 관련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5. COVID-19 기간 동안 외국인 직원의 검역 비용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처리 지침

Covid-19 기간 동안 외국인 직원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국세청과 하노이 세무국은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2020년 11월 26일 국세청 공문5032/TCT-CS:

근로 계약서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 한 집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역 기간 중 외국인 종업원의 숙박비는 법인세 산정시 공제 가능한 비용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만큼의 유효한 증빙문서가 갖추어진 항공료도 공제 가능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소득세 측면에서 외국인 종업원이 베트남에 입국 할 때 COVID-19 전염병에 대한 격리 비용은 직원의 이익으로 간주되며 개인소득세 대상입니다.

### 2020년 11월 10일 하노이 세무국 공문 97748 / CT-TTHT:

Covid-19 전염병의 경우, 기업이 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격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수혜자 이름으로 비용을 명시하면 해당 비용은 직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 과세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1 개월 평균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복지 비용 인 경우 법인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위의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지방 세무 당국이 여전히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세 처리 적용을 고려하고 조세 회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하는 검역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6. 공문 No. 99066 / CTHN- TTHT :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일

2020년 11월 13일, 하노이 세무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한 공문 99066 / CTHN-TTHT를 발행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123/2020/ND-CP 법령이 발효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에 대한 다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에는 적격증빙서류로 식별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 (판매자의 전자 서명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상 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전자 인보이스 발행일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납세 및 회계 의무를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Contact

고객님께서 조세, 회계, 가격이전, 외국인의 활동, 투자, 세관 및 노동자, 투자정책, 생산영업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의 전문가 들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소식을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경우, 우측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Hub](#)

## Head Office in Hanoi

18<sup>th</sup>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mailto:khoi.hoang@vn.gt.com)

### 권혁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mailto:hyuckjun.kwon@vn.gt.com)

###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mailto:ngan.bui@vn.gt.com)

### 김민제 (Kim Minje)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mailto:minje.kim@vn.gt.com)

###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mailto:du.nguyen@vn.gt.com)

###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mailto:Vishwa.Sharan@vn.gt.com)

### Hoang Viet Dung

Director - Tax & Transfer Pricing Services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mailto:dung.hoang@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sup>th</sup>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mailto:hungdu.nguyen@vn.gt.com)

###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mailto:mongvan.tran@vn.gt.com)

###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mailto:tho.lac@vn.gt.com)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mailto:valerie.teo@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mailto:thuphuong.nguyen@vn.gt.com)

